

용궁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감시카메라(CCTV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2025년 용궁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감시카메라(CCTV)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4. 15.

용 궁 면 장 인 

1. 행정예고 내용

쓰레기 불법투기 고정식 감시카메라(CCTV) 설치

2. 설치목적

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3. 설치장소

연번	주 소	대수	비고
1	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869	1	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

4. 공고방법

예천군청 및 용궁면 홈페이지

5. 행정예고기간

2025. 4. 15. ~ 2025. 5. 7.(23일간)

6. 관련 근거

- 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용궁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,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 및 그 이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다. 의견제출 기간 : 2025. 4. 15. ~ 2025. 5. 7.(22일간)
- 라. 의견서 제출서식 : 붙임
- 마. 제 출 처 : 용궁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
 - 1) 주소 :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45 용궁면행정복지센터
 - 2) 전화 : 054-650-8672

바. 기타사항 :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

붙임 의견 제출서 1부. 끝.

의견서 제출서

행정예고명

용궁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감시카메라(CCTV) 설치

의견 제출자

성명
(개인/단체)

--	--

주소

--	--

설치예정 위치

의견제출 내용

용궁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
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용궁면장 귀하

2025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용궁면장 귀하